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33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0.

발 의 자:서일준·지성호·임이자

김영식 • 곽상도 • 박상혁

한무경 • 이주환 • 강민국

하영제 · 이헌승 · 김태휴

조수진・이 영・추경호

김기현 · 김형동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철탑이나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시설은 광역적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필수적 광역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,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해당 주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함.

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선 철탑이나 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,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철탑, 송전선로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 구밀집지역에 설치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고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철탑,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설치된 경 우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역시설의 종류, 인구밀집지역 의 조건·범위 및 그 밖에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광역시설의 설치·관리 등)	제45조(광역시설의 설치·관리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
	의 철탑,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
<신 설>	이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국토
	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
	내에 설치된 경우 「전기사업
	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
	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
	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
	역시설의 종류, 인구밀집지역의
	<u>조건·범위 및 그 밖에 광역시</u>
	설의 지중화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	⑥ 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
	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
	광역시설의 지중화에 필요한
	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
	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.